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신청서”를 “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”로, “서류”를 “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”로 한다.

제10조제2호 중 “기사 자격”을 “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되는 날”을 “되는 날 (다만,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)”로 한다.

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26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용량 500킬로와트(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경우) 미만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

제26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용량 250킬로와트(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경우) 미만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

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4조(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(변경인가) <u>신청서</u> 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(변경인가)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<u>서류</u> 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4조(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</u> ----- - <u>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) 사 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「국가기 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·안전관 리(전기안전)·토목·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수행해야 한다.	제10조(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 분야의 <u>기사</u> 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	2. ----- <u>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</u>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) ① 안전공	제20조(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) ① -----

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.

1.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: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,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4조(안전등급 지정의 대상·기준 및 절차) ① ~ ⑥ (생략)
<신설>

제26조(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)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(이하 “대행사업자”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(이하 “개인대행자”라 한다)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

-----.

1. -----

되는 날 (다만,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)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안전등급 지정의 대상·기준 및 절차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26조(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) -----

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)

가. ~ 다. (생략)

<신 설>

2. 개인대행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)

가. ~ 다. (생략)

<신 설>

1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용량 500킬로와트(원격감시
·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) 미
만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
전설비

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용량 250킬로와트(원격감시
·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) 미
만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
전설비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4]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(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				[별표 4]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(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			
구분	대상	시기	비고	구분	대상	시기	비고
1. 전기사업 용 전기설비 : (생략)	(1) (생략) (4) (생략) (5) 태양광설비 (가) 태양광·전기설비 계통 (나)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사업 허 가 당시 「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 른 <u>전답·과수원·임 야 또는 염전 지역</u> (「간척지의 농어 업적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「전기사 업법」에 따른 전 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 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전 답, 과수원,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 록된 지 30년이 지 나지 않은 지역으 로 한정한다)에 설 치된 태양광발전소 의 부지 및 구조물 (9) (생략)	(생략) (생략) 4년 이내 2년 이내	(생략)	1. 전기사업 용 전기설 비 : (현행 과 같음)	(1) (현행과 같음) (4) (현행과 같음) (5) 태양광설비 (가) 태양광·전기설비 계통 (나) 「전기사업법」에 따 른 전기사업 허가 당 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<u>전답·과수원·임 야, 염전 지역</u> (「간척 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간척지 였던 경우에는 「전 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, 과수원,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 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) 또는 「공 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·사 용 허가를 받은 간척 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및 구 조물 (9) (현행과 같음)	(생략) (생략) 4년 이내 2년 이내	(생략)